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595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론 종결 2021. 4. 20.

판결 선고 2021. 5. 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2009. 12. 31.까지 성립한 572,949,660원인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B의 부친 C가 2018. 5.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처 D, 자녀 E, F, 피고, B, G, H은 2018. 10.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피고는 2018. 10.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8. 10. 17. 당시 B는 적극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토지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대로 종중이 C에게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종중이 조세 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원 등에 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유효한데,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원상회복

피고가 B와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B의 상속지분인 2/15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수정

[별지]

목 록

(트지의 표시)

1. 경기도 여주시 전 716㎡
2. 경기도 여주시 대 235㎡
3. 경기도 여주시 답 1,369㎡(공유자 지분 3분의 1)
4. 경기도 여주시 전 1,656㎡(공유자 지분 5분의 1)
5. 경기도 여주시 전 1,002㎡(공유자 지분 5분의 1)